

**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개정내용 요약**  
(2013.8. 29. 공포·시행)

**[별표 3]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내용 비교**

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관련)

신 고 인	종 전 기 준		개 정 지 급 기 준	
내부종사자	징수금이 3만원 이상 2백만원 이하인 경우	징수금 × 30/100	징수금이 3만원 이상 <u>500만원 이하인 경우</u>	징수금 × 30/100
	징수금이 2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	60만원 + (200만원 초과 징수금 × 20/100)	징수금이 500만원 초과 <u>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</u>	150만원 + (500만원 초과 징 수금 × 20/100)
	징수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	2천만원의 범위에서 220만원 + (1,000만원 초과 징 수금 × 10/100)	징수금이 <u>2천500만원</u> 을 넘는 경우	<u>5천만원의 범위에서</u> 550만원 + (2천500만원 초과 징수금 × 10/100)
일반 신고인	징수금이 2만원 이상 2백만원 이하인 경우	징수금 × 20/100	징수금이 2만원 이상 <u>1천만원 이하인 경우</u>	징수금 × 20/100
	징수금이 2백만원 초과 4백만원 이하인 경우	40만원 + (200만원 초과 징수금 × 15/100)	징수금이 <u>1천만원 초과</u> <u>2천만원 이하인 경우</u>	200만원+ (1천만원 초과 징수 금 × 15/100)
	징수금이 4백만원을 넘는 경우	100만원의 범위에서 70만원 + (400만원 초과 징수 금 × 10/100)	징수금이 <u>2천만원</u> 을 넘는 경우	<u>500만원의 범위에서</u> 350만원+ (2천만원 초과징 수금 × 10/100)

- 부칙 제2조 (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